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군 (계급)	직렬(직류)	선발예정 인원	선발구분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 (9급)	교육행정 (교육행정)	35명	31명	3명	1명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선택)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 (9급)	공업 (일반기계) <i>*특성화고</i>	1명	1명			1차 : 물리 2차 : 기계일반, 기계설계
합 계			36명	32명	3명	1명	

- ※ 교육행정직렬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50조의2)
- ※ 교육행정직렬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일반 응시자 중에서의 추가선발은 없습니다.
-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학」은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에서 출제됩니다.
- ※ **공업(일반기계) 직렬은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로 학교장 추천자에 한해 응시 가능합니다.**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시험명	직렬(직류)	과목수	시험시간
공개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교육행정)	5과목	100분(10:00~11:40)
경력경쟁임용시험	공업(일반기계)	3과목	60분(10:00~11:00)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제1·2차 시험합격자에 한해 응시가능)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안내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3.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 단, 경력경쟁임용시험<특성화고 졸업(예정)자 구분모집>에 한하여 2001년 1~2월생으로 2018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도 응시 가능

다. 성별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제한 (★등록기준지는 응시불가)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경력경쟁임용시험<공업(일반기계)> 응시자는 거주지제한을 두지 않음

1. 2018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 내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은 종전,

-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으로 2012. 7. 1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된 지역을 말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마. **학력·자격(면허)증 등 제한** : 아래 직렬의 응시자는 해당 학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당해 최종(면접) 시험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시험명	직군(계급)	직렬(직류)	학력·자격(면허)증 등 제한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 (9급)	공업 (일반기계) *특성화고	▶ 세종특별자치시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학과【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졸업자(201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구분모집** **[경력경쟁 공업(일반기계)직만 해당]**

1)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공업(일반기계) 직렬의 임용예정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를 이수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로 대학(전문대, 방통대, 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의 재·휴학자 포함)에 진학 사실이 없는 자
<기술계 고교를 졸업한 대학 중퇴자(2018.1.1.기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로 간주>
-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대학의 입학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성적기준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기준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졸업자) 고등학교 3학년 성적 기준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학년~2학년 성적 기준

○ 허위학력 기재자 조치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현재까지 대학에 등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학에 진학(재학·휴학) 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필기, 최종 시험 포함) 및 임용이 무효 처리됨

2) 추천서 등 사전제출 (**해당학교 일괄제출**)

- 제출기간 : **2018. 3. 5.(월) ~ 2018. 3. 9.(금) 09:00 ~ 18:00**
- 제출방법 : 해당 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일괄 제출 (**추천대상자 개인별 제출 불가**)
- 제출장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3층)
※ 등기우편 제출시 접수기간 마감일(2018.3.9.)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 추천 현황표 및 추천서, 각서 각 1부(붙임1 서식 참조)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성적증명서(석차비율 기재)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3) 응시원서 접수 : 학교장 추천자에 한해서 인터넷 원서접수 (**개인별 접수**)
<http://edurecruit.sje.go.kr>

※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원서 접수한 사람은 차후에 원서접수가 취소되니, 추천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원서 접수**

4) 기타사항

-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 미접수 시 필기시험을 볼 수 없으므로**, 추천 학교에서는 추천 대상자들이 인터넷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접수기간 안내 및 접수지원 등 편의 제공

사. 장애인 구분 모집 (**공개경쟁 교육행정직만 해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018.3.30.)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붙임2]장애인 편의지원 안내에 따라 지정한 기한 내에 장애인 증빙서류 및 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저소득층 구분 모집 (공개경쟁 교육행정직만 해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2018.3.3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보며,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어야 합니다.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어야 함)
 -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저소득 구분 선발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구분 선발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불가)**

○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읍·면·동사무소 기초생활보장 담당자·한부모가족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문제 출제

가. 시험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로 시행합니다.

구 분	출제 기관	출제 과목	공개 여부	문제책 회수여부
위탁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물리	공개	미회수
공동출제	17개 시·도교육청	위탁출제하지 않는 시험과목	비공개	회수

※ 위탁 출제과목 문제는 필기시험 당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 공개예정입니다.

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위탁 출제한 시험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회수하지 않으며,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출제한 시험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일괄 회수하므로 시험문제책을 훼손하거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5.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 일정

시험 구분	원서접수 및 취소 기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필기	2018.3.26.(월) ~ 3.30.(금) (취소기간 : 3.26.(월)~4.2.(월))	2018. 4. 30.(월)	2018. 5. 19.(토) [09:20분까지 입실완료]	2018. 6. 15.(금)
면접		2018. 6. 15.(금)	2018. 7. 5.(목)	2018. 7. 12.(목)

가. 시험장소(필기, 면접) 및 합격자발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sje.go.kr>) **행정마당>주요소식>고시공고**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나. **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일간(2018.6.15.~2018.6.1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edurecruit.sje.go.kr>)>**지방공무원채용**을 통하여 본인 성적만 조회(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2018. 3. 26.(월) 09:00 ~ 2018. 3. 30.(금) 18:00까지**

나.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8. 3. 26.(월) ~ 2018. 4. 2.(월) 18:00까지

다. 접수방법

1)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

☞ <http://edurecruit.sje.go.kr> > 지방공무원채용

[응시원서 접수기간 **첫날 09:00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 접수기간 24시간 가능 (**단, 접수 마지막 날은 18시까지만 접수**)

※ 24:00~08:00 사이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수 및 취소가 정상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처음 접속 PC인 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다소 시간이 지연됨에 유의 바랍니다.

※ **특히, 원서 접수 마감일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하거나 응시수수료 미납 등으로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 5,000원

○ 납부방법 : 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 원서접수 마감 후 증빙서류를 제출 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수수료 환불)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 규 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컬러 **증명사진**, 파일용량 **100KB 이하**
- 파일명 : **JPG** 또는 **GIF** 파일
- 기 타 : 응시원서 **접수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배경이 없고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 시험당일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4) 응시표 출력

-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마감 후 취소 기간 이후에 부여됩니다.
- **응시표는 2018. 5. 1.(화)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응시표는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접수증만 출력이 가능하며, 응시표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랍니다.
-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입력사항에 대한 수정은 불가합니다.(단,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전일까지** 가능)
- 3)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 4)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확인 (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확인 등)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와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 5)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에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6) 원서접수 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7) PC환경 : 운영체제 윈도우 7~10과 익스플로러 버전 7.0~11.0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각각 적용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공통적용 1개, 직렬별 1개)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 【공통적용가산점 1개】 + 【직렬별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아래 1)호와 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선택해야 합니다.

- 1) **취업지원대상자** : 아래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모집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반영됨

- 2) **의사상자 등** : 아래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 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선발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반영됨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10% 또는 5%)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1577-0606)에,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5% 또는 3%)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아래 표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분 야	임용 직급	자격증	가산점 비 율
통신정보 처 리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함

2)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직렬(직류)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가점 부여)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5조제2항)

직렬(직류) 직급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훈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 (교육행정) 9급		변호사	5%
공업 (일반기계) 9급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 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 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 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 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 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5%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 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3%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훈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라.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 의사상자의 경우 가산비율(5% 또는 3%)과 증서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2)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 4) 위의 "나"항과 "다"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수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합니다.
- 5) 위의 "나"항과 "다"항의 "각 과목별 40% 이상" 이란 응시자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필기시험 시 가산점을 허위로 표기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하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합니다.
- 나.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 다. 응시자는 주소지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 지를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라.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자격 미비자 또는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바. 시험당일 **오전 9시 20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당일 9시 20분에 고사장 출입문을 통제하오니 여유 있게 도착하기 바랍니다.
- 사.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적색)펜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아. 응시자는 시험장에 소리가 나지 않는 아날로그시계를 제외한 스마트워치, 이어폰, 무선호출기, 휴대폰, MP3, PDA,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전자기기 및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으며, 적발 시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됩니다.

다만,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실 전면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필기시험 시행 당일 **공동출제과목 문제책은 답안지와 함께 시험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기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에 따라 지정기한 내 (2018.3.26.~3.30. 18:00)에 장애인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문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 행정마당>주요소식>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 시행 7일전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 행정마당>주요소식>고시공고에 별도 공고합니다.

바. 시험관련 문의처

- 시험 운영에 관한 사항(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4-320-3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시스템 장애 문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과 전산행정담당 (☎ 070-8244-42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현황표, 추천서 및 각서 각 1부.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안내 1부.

붙임1**특성화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현황표, 추천서 및 각서**

<서식1>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응시대상자 추천 현황표**

1. 학교명: ○○ 고등학교 (직인)

(담당자: , 학교 연락처: , 핸드폰 번호:)

2. 추천대상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응시 직렬 (직류)	전공학과	성 적*			성별	졸업 (예정)일
()	()		성취평가제 미 적 용	평균석차비율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		
			성취평가제 적 용		평균석차비율		
				전문교과	전과목 성취도 평균 B 이상		
			성취도 A 비율				

* 보통교과의 경우 평균석차등급과 평균석차비율 중 한 개만 기재하여도 됨

3. 추천 현황

직 렬	직 류	학교 내 지원자 수(명)	최종 추천자 수(명)
공 업	일반기계		
계			

<서식2>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응시대상자 추천서

추천직렬(직류)	공업(일반기계)
----------	----------

인적 사항	성 명	(한자:)		사 진 (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주민등록번호	-			
학력 사항	출신학교				
	소재지				
	학과(정원)	학과(정원 명)			
	졸업여부	년	월(졸업, 졸업예정)		
학업성적	성취평가제 미적용	석차비율	상위 %(등/ 명)		
	성취평가제 적용	보통 교과	평균 석차등급	평균석차비율	상위 %(등/ 명)
		전문 교과	성취도 평균80이상	해당 () 미해당 ()	성취도 A 과목 비율
연락처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p>위 사람은「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응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선발 분야의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임을 확인하며,「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 제7호에 따라 응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고등학교장 (직인)</p> <p>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p>					
<p>※ 추가 제출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기록부 사본 1부 2. 성적증명서(석차비율 기재) 1부 - 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을 기재 3.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4.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각서(응시자 본인 작성) 1부 					
<p><input type="checkbox"/> 담당 교사 : 성명 연락처(핸드폰) 연락처(학교)</p>					

<서식3>

각 서

- 학 교 명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위 본인은「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학교장 추천일 현재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합격(임용) 취소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8. . . .

성명

(서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안내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 등 신체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나.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임신부)

※ 단,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편의지원 내용(음성지원 등)이 제한됩니다.

2. 편의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 2018. 3. 26.(월) 09:00 ~ 2018. 3. 30.(금) 18:00

나.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응시원서는 별도로 인터넷으로 접수해야 함)

※ 우편접수의 경우, 신청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다. 제출장소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3층)

라. 제출서류 : 편의지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중 장애등급과 편의지원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 [☞【참고】확인 작성](#)

마. 문 의 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4-320-3122)

3. 편의지원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가. 【참고】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참고】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나.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은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다.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라.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아래 표 녹색 표시)
- 2)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아래 표 적색 표시)
-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아래 표 보라색 표시)

유형	등급(정도)	예 시
시각장애	6급	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0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장애	경증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	-	상기인은 임신 6주에 해당되는 자로서, 자궁의 확대에 의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마. 대필의 경우 수험생 본인이 확대답안지에 기재하고 OMR 답안지 이기는 시험종료 후 담당 시험감독관이 수험생 입회하에 이기합니다.

바. 다음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내용이 다를 경우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 시험 진행 일정상 신청기간에 편의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8년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등급)		필기시험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장애	중증 상지지체 (1급~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편의지원 신청서<서식1> 장애인증명서 사본
	경증 상지지체 (4급~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하지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뇌병변장애	중증 뇌병변 (1급~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대필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편의지원 신청서<서식1>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추가)
	경증 뇌병변 (4급~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각장애	1급~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지원 신청서<서식2> 장애인증명서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시간 1.5배 연장 (단, 5급 2호는 시간연장 불가 및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일 경우, 시간연장 가능) ▶ 점자문제지, 음성지원 	편의지원 신청서<서식2>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추가)
청각장애	2급~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지원 신청서<서식3> 장애인증명서 사본
임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편의지원 신청서<서식4> 의사소견서

※ 시험시간 연장되어 150분을 초과하는 경우와 임신부로서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허용된 자는 화장실 사용시간을 시험시간에 포함

<서식2>

편의지원 신청서

(시각장애인용)

- 응시직렬(직류) :
- 성 명 : (휴대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 원서접수 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여부 : (예, 아니오)

위 본인은 시각장애 ()급으로 문제판독 및 OMR 답안지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필기시험에서 아래와 같이 편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 내용 >

장애유형	편의지원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구비서류
시각장애	확대문제지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 원본 중 해당하는 서류
	확대답안지		
	점자문제지		
	음성지원		
	시험시간 연장		
	보조공학기기 자참		

* 장애인증빙서의 범위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의사 진단서에는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접수번호 : ○ 응시번호 :

<서식3>

편의지원 신청서

(청각장애인용)

- 응시직렬(직류) :
- 성 명 : (휴대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 원서접수 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여부 : (예, 아니오)

위 본인은 청각장애 ()급으로 문제판독 및 OMR 답안지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어,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필기시험에서 아래와 같이 편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 내용 >

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구비서류
청각장애	보조공학기기 지참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 원본 중 해당하는 서류

* 장애인증빙서의 범위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2018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접수번호 : ○ 응시번호 :

<서식4>

편의지원 신청서

(임신부용)

○ 응시직렬(직류) :

○ 성 명 : (휴대전화 : , ☎)

○ 주민등록번호 :

위 본인은 임신부로서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 필기시험에서 아래와 같이 편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 내용 >

구분	편의지원 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구비서류
임신부	별도 시험실 배정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 원본 중 해당하는 서류
	시험 중 화장실 사용		

* 의사 진단서에는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접수번호 :

○ 응시번호 :